

# 구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구 미 시

# 구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
|----------|--|

제출연월일 : 20 . . .  
제출자 : 구미시장

## 1. 제안이유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수도관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다. 부담금 부과·징수, 정산, 과오납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9조)
- 라. 공사시행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 마. 이 조례의 제정에 따라 기존의 「구미시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함

## 3. 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구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당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라 함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라 함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라 함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라 함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출장경비”라 함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7. “지원경비”라 함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8. “홍보비”라 함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수도관리자의 의무) ①시장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부과대상사업은 별표1과 같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당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②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손피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등 기타

제5조 (부담금 산정기준)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2. 단위단가(단위사업비, 단위순자산, 구경별원인자부담금)는 별표2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고하여야 한다.

3.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구미시 수도급수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4와 같다.

3.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구미시 여비조례」에 의한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제6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⑥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다수의 원인자 등) ①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

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
2. 당해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 (부담금 등의 정산) ①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 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과오납처리) ①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 절차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공사시행자) ①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피자가 시행할 수 없다.

②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피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구미시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및손피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별표 1] (제4조제1항 관련)

부과대상사업의 분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대규모개발사업(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과 단위개발사업(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으로 분류한다. 또한 단위개발사업은 주거시설,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판매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분류하고 각 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의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같다.

**1. 대규모개발사업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시 협의하는 사업**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의한 개발사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에 의한 개발사업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
- 기타 대규모사업 등(토지형질변경 면적 5,000㎡ 이상일 것)

**2. 단위개발사업: 개별 건축물**

**1) 주거시설**

-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호 해당 건축물)
- 공동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호 해당 건축물)

**2) 숙박시설**

- 숙박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5호 해당 건축물)

**3) 교육연구시설**

- 교육연구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0호 해당 건축물)

**4) 의료시설**

- 의료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9호 해당 건축물)

## 5) 판매시설

- 판매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7호 해당 건축물)

## 6) 기타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해당 건축물)
-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4호 해당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5호 해당 건축물)
- 종교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6호 해당 건축물)
- 운수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8호 해당 건축물)
- 노유자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1호 해당 건축물)
- 수련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2호 해당 건축물)
- 운동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3호 해당 건축물)
- 업무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4호 해당 건축물)
- 위락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6호 해당 건축물)
- 공장(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7호 해당 건축물)
- 창고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8호 해당 건축물)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9호 해당 건축물)
- 자동차 관련 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0호 해당 건축물)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1호 해당 건축물)
- 자원순환관련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2호 해당 건축물)
- 교정및군사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3호 해당 건축물)
- 방송통신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4호 해당 건축물)
- 발전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5호 해당 건축물)
- 묘지관련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6호 해당 건축물)
- 관광휴게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해당 건축물)
- 장례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8호 해당 건축물)
- 야영장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9호 해당 건축물)

[별표 2]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관련)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text{원인자부담금} = \text{단위사업비} \times \text{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1.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m<sup>3</sup>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m<sup>3</sup>당 사업비  
나. 신·증설되는 관로에 대한 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가. 1인1일 최대급수량 = 1인1일급수량 × 침투계수  
나. 1인1일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가정용사용량을 비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3.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text{원인자부담금} = [(\text{단위순자산} \times \text{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text{추가사업비}]$$

1. 단위순자산이라함은 수도시설 순자산을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m<sup>3</sup>당 순자산을 말한다.
2.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 (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3.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4. 수도계량기 신청 구경100mm이하인 경우에는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에 추가사업비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                                           |
|-------------------------------------------|
| $\text{원인자부담금} = \text{수도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
|-------------------------------------------|

1.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은 순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담부담액을 말한다.  
가. 구경별부담액=자산×구경별적수합계/총적수합계  
나. 구경별적수=특정구경수량합계×윌리엄헤이즌공식에 의한 보정계수  
다. 전담부담액=구경별부담액/구경별 전수  
\* 순자산은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와 동일하다.
2. 2호이상의 공동주택(대단위 아파트, 다세대주택)에 대한 급수전은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전체호수에 세대당 원인자부담금을 곱하여 징수하고, 전체호수에 원인자부담금을 곱한 금액과 급수공사시 설치할 수도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중 그 금액이 많은 것을 징수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설공용의 급수설비에 대하여는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4. 급수관의 구경확대 및 수전분리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5. 급수설비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 공동주택(대단위 아파트, 다세대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의 원인자부담금은 각호별로 산정하되, 이미 설치된 급수관별 원인자부담금에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6. 급수설비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 급수의 용도를 변경하여 가구분할조정을 할 경우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되어야 하며, 기존 주계량기 설치시 세대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각 세대별로 징수한다.

[별표 3] (제5조제1항제3호 관련)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

| 부과대상사업         |        | 산정기준                            |
|----------------|--------|---------------------------------|
| 대규모개발사업        |        |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승인시 용수사용량           |
| 단위<br>개발<br>사업 | 주거시설   | 세대수 × 2.43인 × 0.300㎥/인·일 × 1.27 |
|                | 숙박시설   | 건축연면적(㎡) × 0.0242㎥/㎡·일 × 1.27   |
|                | 교육연구시설 | 건축연면적(㎡) × 0.0083㎥/㎡·일 × 1.27   |
|                | 의료시설   | 건축연면적(㎡) × 0.0224㎥/㎡·일 × 1.27   |
|                | 판매시설   | 건축연면적(㎡) × 0.0218㎥/㎡·일 × 1.27   |
|                | 기타시설   | 건축연면적(㎡) × 0.0124㎥/㎡·일 × 1.27   |

- 註) 1. 시설유형의 적용은 건축허가서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시설유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시설유형을 적용한다.
2. 건축물의 부속 주차장, 전기실, 발전기실, 지하저수조, 펌프실 등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별표 4] (제5조제2항제2호 관련)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CA\sqrt{2gh}$$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CA\sqrt{2gh}(\text{오리피스공식})$$

$$- Q2 = 0.64 \times \frac{a}{10000} \times \sqrt{2 \times 9.8 \times 10p \times 3600} = 3.2ap^{\frac{1}{2}}$$

|                                                     |                                    |
|-----------------------------------------------------|------------------------------------|
| Q1 = 초당 손실수량(m <sup>3</sup> /sec)                   | Q2 = 시간당 손실수량 (m <sup>3</sup> /hr) |
| C = 유량계수 (Ca × Cv)                                  | Ca = 수축계수 (0.666적용)                |
| Cv = 유속계수 (0.97적용)                                  |                                    |
| ∴ C = 0.666 × 0.97 = 0.64                           |                                    |
| A = 면적(m <sup>2</sup> ) = 10,000a(cm <sup>2</sup> ) | g = 중력가속도(9.8m/sec <sup>2</sup> )  |
| H = 수두(m) = 10p                                     | p = 수압(kg/cm <sup>2</sup> )        |
| (수두 10m는 수압1kg/cm <sup>2</sup> 에 해당)                |                                    |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체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times L$$

|                           |                         |           |
|---------------------------|-------------------------|-----------|
| Q = 손실수량(m <sup>3</sup> ) | A = 면적(m <sup>2</sup> ) | L =연장 (m) |
|---------------------------|-------------------------|-----------|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 관계법령

###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8.>

###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

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 3., 2017. 4. 11.>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1. 3.>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도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④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8. 1. 3.>

⑤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 1. 3.>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1. 3.>

| 소관 실·과      |       | 수 도 과               |
|-------------|-------|---------------------|
| 입<br>안<br>자 | 과 장   | 류 형 욱               |
|             | 담 당   | 김 병 성               |
|             | 담 당 자 | 이 희 영<br>(480-4452) |